

「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1월 1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01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01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사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「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」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과, 지역보건법 제11조 4호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원리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,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참여를 위한 「건강협의체 위원회」를 구성하고 이에 관련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(안 제3조)

나. 센터의 업무 및 기능(안 제4조)

다. 건강협의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
라. 건강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(안 제11조)

마. 건강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천소영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
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

현재 진부면에 위치한 “**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**”의 설치·운영에 관한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의 형식은

본칙 3장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은

안 제4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

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군민의 이용 및 기관·단체의 사용허가

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

심의·자문기관인 건강협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
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상

“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
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설치할 수 있음”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에 따라 평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평창군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건강생활지원센터”란 지역사회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등) ① 군수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② 평창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“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③ 센터의 위치는 “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13”으로 하고, 관할 구역은 “평창군 일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센터의 업무·시설·조직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
2.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 건강 문제 파악과 자료 구축

3.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
4. 주민참여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
5. 지역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
6. 지역사회 건강협의체, 주민조직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

② 센터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실을 둔다.

1. 통합상담실
2.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
3. 건강관리실(교육실, 운동처방실, 재활치료실, 영양실습실, 금연상담실)
4. 주민참여실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

③ 센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의 정원·복무·사무분장·보수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시간 및 휴일)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(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) 8시간으로 하되, 프로그램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휴일은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.

제2장 이용 및 사용

제6조(이용) 센터는 모든 군민과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을 허용한다. 다만, 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2.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,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
제7조(사용허가·신청·취소) ① 군수는 다른 기관·단체 등이 각종 건강증진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등은 그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군수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 기관·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해당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·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(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 또는 변경 등 허가·신청에서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 될 경우에는 센터의 설립목적 관련 사용을 우선하되,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.
2.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.

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사를 진행한 때
2.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때
3.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

제8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를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, 사용을 마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3장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

제9조(설치·구성)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실무네트워크 건강위원 주민조직 발굴
5.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
6.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

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「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건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건강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협의체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1. 보건의료원장
2.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위원
3. 의사협회, 약사협회, 장애인복지센터, 노인회 등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

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,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(互選)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 운영)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

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.

1.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
5.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14조(실무네트워크 주민조직 구성 운영)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 주민조직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네트워크 주민조직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운영지원) ①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

(제7조제2항 관련)

신청인 또는 단체명	주 소					
	단 체 명				연락처	사무실 : 자 택 :
	성 명 (대표자)		성별		핸드폰	
행 사 명						
사용목적 및 내용						
사 용 시 설		시설명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년 월 일 (일간)	시부터 시까지	사 용 횟 수	오전 : 회 오후 : 회 야간 : 회		
첨부서류	행사 계획서 1부					
<p>「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평창군수 귀하</p>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사용허가 (변경·취소)신청서

(제7조제3항 관련)

신청인	주소	우편번호 :				
	단체명			전화	사무실	
	대표자		성별		자택	
사용시설						
행사명						
변경사항	구분	변경 전			변경 후	
	사용일시					
	사용시설					
	기타					
변경사유 (취소사유)						
「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승인 (변경·취소)를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	
평창군수 귀하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회 의 록

(제12조제4항 관련)

일시					
장소					
안건					
연번	직위		성별	성명	비고
1	위원장				
2	위원				
3	위원				
4	위원				
5	위원				
6	위원				
7	위원				
8	위원				
9	위원				
10	위원				
11	위원				
12	위원				
13	위원				
14	위원				
15	위원				
간사	센터장				
심의안건 주요내용 및 결과					